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이용자 통지〉

■ 이상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02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할 의무 규정(안 제48조의3 제4항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상회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5. 7. 10.

다. 회 부 일 : 2025.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두지 않음.

최근 SK텔레콤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침해사고의 위험성과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통지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할 의무 규정(안 제48조의3 제4항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침해사고 통지를 하였으면 이용자 통지를 한 것으로 갈음함(안 제48조의3 제4항).
- 침해사고가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 제3항 제11호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u>

현행	개정안
④ (생략) 제76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1. (생략) <u><신설></u> 11의3. ~ 25. (생략)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11. (현행과 같음) 11의2. 제4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의3. ~ 2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¹⁾하고 있으나,
- 침해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용자에 대한 사실통지 의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1)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안 제48조의3 제4항은 침해사고 신고와 마찬가지로 해당 이용자에게도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통지할 의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이용자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단, 2024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1,887건²⁾으로 일 평균 약 5.2건의 침해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를 모두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큰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침해사고에 대한 이용자의 판단 및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음.
- 따라서, 이용자 통지 의무를 모든 침해사고에 적용하기보다는 침해사고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한 침해사고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를 규정하려는 동법 개정안(의안번호 2211392, 인요한의원 대표 발의)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통지를 의무화하면

2) “2024년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25.1.24.

사업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꺼려 침해사고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지의무 대상 사업자를 한정하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중대한 침해사고만 통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